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 4호

「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7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##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자격기준 중,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 방지.
-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자격기준 중,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설조항 필요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강화(안 제7조 제1호)
- 나.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 신설(안 제7조 제6호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100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본문 중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자의 자격)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사망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시에 주소를 두고 <u>6개월</u>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. 다만, 시 사천면 석교리 출신자는 등록기준지를 포함한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7조(사용자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----- ----- -----<u>1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